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계 구조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에서 건설기계를 제작하거나 조립하는 자를 제외하고, 제작결함 시정조치 대상 건설기계가 폐기 등으로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시정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시정조치 진행상황 보고 기준을 개선하며, 건설기계 보유대수의 변경이 180일 이내의 일시적인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사업자의 변경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국무조정실 사전규제심사(2025. 4. 29. ~ 5. 9.)

3) 입법예고(2025. 5. 29. ~ 7. 8.)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6호 중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제작하거나 조립하는 자 또는 영 제14조”를 “영 제14조”로 한다.

제56조의10제2항 중 “시정조치가 끝날”을 “시정조치의 진행률이 90퍼센트에 도달할”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속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1.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2.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으로 인명피해가 있는 사고를 초래한 경우
3.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으로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그 진행상황

을 보고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진행상황 완료보고 대상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해당 제작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 제작결함이 있는 건설기계 중 법 제6조제1항제2호·제6호·제8호·제9호의 사유로 등록말소된 건설기계 등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건설기계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진행률을 산정할 때 시정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66조제2항제4호 중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를 “변경되지 않거나 180일 이내의 일시적 변경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97조제2호 중 “제58조, 제59조”를 “제59조”로, “따른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및”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제3호마목 중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건설기계를 제작·조립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로 한다.

별지 제27호의3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란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조치의 진행상황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10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56조의10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기간이 종료되었음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하는 자 또는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정비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발행하는 구조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생 략)

제56조의10(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 ① (생 략)

② 제작자등은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가 끝날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작자등은 시정조치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정조치기간이 종료되었음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현행과 같음)

제56조의10(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시정조치의 진행률이 90퍼센트에 도달할 -----

----- 보
고해야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속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1.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2.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으로 인

<신 설> <신 설> 제66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① (생략) ②법 제24조에서 “등록한 사항	<u>명피해가 있는 사고를 초래한 경우</u> 3. <u>건설기계의 제작결함으로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 4. <u>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그 진행상황을 보고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u> ④ <u>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진행상황 완료보고 대상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해당 제작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u> ⑤ <u>제작결함이 있는 건설기계 중 법 제6조제1항제2호·제6호·제8호·제9호의 사유로 등록말소된 건설기계 등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건설기계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진행률을 산정할 때 시정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u> 제66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에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1. ~ 3. (생략) 4. 건설기계의 보유대수(보유대수의 변경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의 구분이 <u>변경되는 경우</u>에 한한다) ③ ~ ⑥ (생략) 제9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생략) 2. <u>제58조, 제59조 및 별표 14에 따른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및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u> 3. (생략) 4. <u>제63조 및 별표 16에 따른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u> 5. ~ 8. 삭제 9. (생략)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u>변경되지 않거나 180일 이내의 일시적 변경인 경우는 제외한다</u>)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97조(규제의 재검토) ----- ----- ----- ----- ----- -----. 1. (현행과 같음) 2. <u>제59조</u> ----- <u>따른</u> ----- ----- 3. (현행과 같음) <u><삭제></u> 9. (현행과 같음)
--	--